

공직자의 종교 편향 · 차별 예방 교육의 방향

고 병 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요 약〉

현재 공직자의 종교 편향 · 차별 논란은 한국 사회의 이슈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직자의 종교 편향 · 차별 예방 교육도 진행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선행 연구도 부족하고, 특히 언론을 통해 남발되는 종교 편향과 종교 차별 개념의 구분과 그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공직자 종교 편향 · 차별 논란과 제반 상황을 살펴보고, 예방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종교 차별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쟁점을 제시한 후(Ⅱ장), 1990년대부터 발생한 공직자 종교 편향 · 차별 논란 사례들을 유형화하면서 그 이면에 종교 편견이 있음을 지적하였다(Ⅲ장). 그리고 종교 편견의 성찰 차원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이해, 종교에 대한 관점, 종교 편견의 성찰을 위한 물음들을 제시하였다(Ⅳ장).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교육의 방향이 종교 일반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제반 편견의 경향을 지속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적절한 관점의 형성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종교 편향 · 차별 논란 사례들, 종교 차별 관련 법적 근거와 쟁점, 종교 편견의 성찰과 종교에 대한 관점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공직자 종교 편향 · 차별 논란을 예방하고, 예방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공직자 종교 편향 · 차별 논란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와 관련하여 향후 학교, 군부대, (민영)교도소 영역 등에 대한 후속 연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핵심 주제어: 공직자, 종교 편향, 종교 차별, 종교 평등권,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 편향과 차별의 유형, 가치판단 유보, 종교 편견의 성찰, 인권

I. 들어가면서

연말이 되면 각종 언론에는 한 해를 결산하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연합뉴스》,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프로메테우스》, 《올댓뉴스》 등에 실린 연말 결산 기사를 보면 2008년에 한국 사회를 달군 주제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다.¹⁾ 물론 이 논란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된다.²⁾ 그렇지만 그 논란의 규모나 지속성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의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 학계에서도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가령 2008년 9월 제8회 기독교언론포럼에서 ‘종교 편향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가 다루어진다. 당시 세미나에는 ‘내면적 양심의 자유가 다종교 사회의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검문이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점, 정부 예산 지원에서 불교계가 종교 편향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 공직자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 등이 논의된다.³⁾

정부도 2008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직자종교 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사례들을 접수받고, 12월에 각 시도에 관련 교육교재를 배포한다.⁴⁾ 그리고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교육은 중앙 부처에서부터 지자체의 공무원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책교육이 된다. 역대 정부가 ‘정통’과 ‘사이비’라는 이분법적 종교 인식을 보였다면 이 조치는 다소 진전된 것이다.⁵⁾

대한불교조계종도 ‘헌법과괴·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의 단체들도 공직자 종교 편향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2009년 8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범불교도대회’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직자의 종교 편향·차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 요원을 확충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2009년

1) 〈2008년 가장 큰 논란은 ‘美쇠고기 반대시위’〉, 《연합뉴스》, 2008년 12월 24일자. (2008.12.11-22일까지 784명에게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기독교연예인들 자살’ 예방에 관심 고조〉, 《크리스천투데이》, 2008년 12월 29일자. (총1,915명의 투표 결과).; 〈시련 딛고 희망으로〉, 《국민일보》, 2008년 12월 26일자. 〈2008년 대한민국 10대 뉴스〉, 《프로메테우스》, 2008년 12월 26일자. 〈지역 교계 ‘부흥·화합·상생’ 외친 한 해〉, 《올댓뉴스》, 2008년 12월 24일자.

2) 〈미국인이 새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서울신문》, 2009년 1월 20일자. 2009년 1월 뉴욕타임스의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 10가지 가운데 ‘정부의 종교 편향성 바로잡기’가 포함되었다.

3) 〈‘종교 편향’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CDNTV》, 2008년 9월 12일자.

4) 〈공직자 종교 차별신고센터 업무 개시〉, 《불교신문》, 2008년 10월 1일자. 『공직자 종교중립 교육』(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공직자종교 차별 예방업무 편람』(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공직자종교 차별 예방업무 편람 발간〉, 《불교신문》, 2008년 12월 11일자. 〈종교 차별 예방의 지름길〉, 《올댓뉴스》, 2008년 12월 16일자.

5) 고병철, 『종무행정:의 역사와 전망』, 강돈구 외 5인,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9), 45-89쪽.

12월에 『종교차별과 종교인권』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⁶⁾

각 지자체에도 공직자의 종교 편향·차별 예방 관련 조치가 등장한다. 가령 2008년 9월, 경상남도는 전 시군에 공무원 종교 편향 방지 지침과 유의사항을 하달하고, 〈경상남도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과 종교 편향 예방 교육을 예고한다.⁷⁾ 부산광역시도 종교 차별 금지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과 종교 편향 예방 교육을 예고한다.⁸⁾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이 논란은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의외로 부족하다. 그나마 1994년의 두 편,⁹⁾ 1996년의 한 편,¹⁰⁾ 그리고 1998년의 한 편의 연구가 정부의 종교 편향성, 구체적으로 기독교 편향성을 지적한다.¹¹⁾ 이 선행연구들은 정부의 종교 편향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렇지만 사례의 유형이나 그 원인 분석이 부족하고,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종교 전반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고의 목적은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형인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예방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종교 차별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을 제기한다. III장에서는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된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 사례들을 조사하여 유형화한다. 사례의 유형화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차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내용 선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의 핵심이 종교에 대한 관점과 종교 편견이 있음에 주목하고 그와 관련하여 예방 교육의 방향을 제기한다. 앞으로 이 연구가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의 이해와 그 예방 교육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종교 차별: 법적 근거와 쟁점

한국 사회에서 종교 편향과 종교 차별이 무분별하게 혼용되는 경향이다. 그렇지만 두

6)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차별과 종교인권』(서울: 도서출판 초록마을, 2009).

7) 〈경상남도,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지침 긴급 시달〉, 《연합뉴스》, 2008년 9월 10일자.

8) 〈종교 편향 행위금지 ‘부산광역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연합뉴스》, 2008년 9월 16자.

9) 박희승, 「한국 사회의 변화와 불교」 『현상과 인식』 18-4(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4); 서동석, 「탄압과 해탈로 점철된 현대 한국불교를 분석한다」 『僧伽』 11(김포: 중앙승가대학교, 1994). 당시 박희승은 조계종포교원 소속, 서동석은 불교인권위원회 양심수 장기수 대책위원장이었다.

10) 최창술, 「정부정책의 종교 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학술 세미나》(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6), 8-19쪽.

11) 남현, 「文民정부인가, 神民정부인가?」 『僧伽』 15(김포: 중앙승가대학교, 1998).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된다. 종교 편향과 종교 차별은 종교 편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렇지만 종교 편견이 개인적이라면 종교 편향은 종교 편견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종교 편향이 도덕적 차원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면, 종교 차별은 종교 편견을 전제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종교 편향이나 종교 차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현상에 종교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종교 편향과 종교 차별은 정치적 수사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공직자는 종교 차별이 법적 규제 대상인만큼 종교 차별 관련 법적 근거와 쟁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 법령에는 〈형법〉상 종교 의례(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의 방해와 관련된 직접적 처벌도,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되는 처벌¹²⁾ 등 종교 관련 규정이 보인다. 종교 관련 주요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법령상의 종교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9.18)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6]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6]

12) 〈형법〉(법률 제7623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7. 29.) 제12장 신상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312조. 〈형법〉은 ①공연성 정도(불특정 다수와 특정인 구분), ②사실 적시 여부(사실, 허위사실, 의견, 사실의 단순 확인의 구분), ③행위 목적(비방, 공공의 이익 구분) 등을 판단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한편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판단 여부도 판건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11.5)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의 ‘종교중립의 의무’ 내용은 2009년 2월 6일에 신설·삽입된다.¹³⁾ 친절·공정 관련 조항에 종교 차별 금지 내용이 신설된 것은 ‘종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당시 종교 차별금지 입법안들의 위헌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2009년 1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기존의 조항에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의된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신설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차별 문제가 그 만큼 한국 사회에서 주요 이슈임을 시사한다.

여러 법령의 종교 관련 규정은 〈헌법〉 제11조와 제20조에 근거한다. 다른 법령의 종교 관련 조항은 대체로 〈헌법〉 조항을 반복하거나 영역별로 다르게 표현할 뿐이다. 따라서 종교 차별 관련 법적 근거를 이해하려면 〈헌법〉 제11조와 제20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과 종교 차별 금지이다. 여기서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거나 국가에게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¹⁵⁾ ‘부당한 차별 대우’는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합리적 설명 근거 없이’ 특정인을 고용이나 처우에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지칭한다.¹⁶⁾ 그와 관련하여 종교 차별은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과 처우에서 종교로 인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대우 행위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광의의 차원에서 종교 차별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서 종교 일반 또는 특정종교를 상대적으로 우대·홀대하는 것’ 또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 수행을 할 때 종교적 중립성을 잃은 상태’를 지칭한다.¹⁷⁾

13)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419호, 2009.2.6, 일부개정 및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9420호, 2009.2.6, 일부개정 및 시행).

14)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renew07/info/inf/tra_read.jsp); 이정훈,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 차별금지 입법 요구의 위헌성』 『제48회 전국불교학술대회자료집』(2008년 가을), 133-148 쪽 참조(한국불교학회 홈페이지: <http://ikabs.org/>).

15) 권영성, 『헌법학원론』(파주: 법문사, 2008), 391쪽.

16)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9402호, 일부개정 2009. 02. 03.) 제2조의 4. 단, 현존하는 차별의 해소를 위해 특정인(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둘째,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종교 선전 또는 선교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그 가운데 신앙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처럼 내면의 절대적 자유이다. 그에 비해 다른 자유는 신앙의 자유가 표현된 것으로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자유이다.¹⁸⁾

선교의 자유에는 종교 비판의 자유, 타종교인에 대한 개종 권고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도 포함된다.¹⁹⁾ 선교의 자유와 관련된 제반 출판물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된다.²⁰⁾ 다만 학원 형태에서 표현되는 종교교육의 자유는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적극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적 요구와 규제를 받는다.²¹⁾

셋째,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교(國敎) 불인정과 정교분리 원칙이다. 국교 불인정과 정교분리 원칙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국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이, 또한 정교분리 때문에 국교 불인정 원칙이 존재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은 법조계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 또는 차별 행위의 금지’, ‘종교의 자유 관련 법률 제정이나 특정 종파에 대한 특별 대우 금지’, ‘특별 보호 또는 억압을 위해 특정 종교에 특혜 또는 부당한 대우 금지’ 등으로 이해된다.²²⁾ 이런 맥락에서 이 원칙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상 주어진 권한’으로 종교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즉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와 종교 사이에 밀고 당기는 정치적 관계로 나타난다. 가령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도 국·공립학교에서는 금지되지만, 국교 지원을 받는 중등 사립학교에서는 진행된다. 또한 법원도 공익 목적의 여부에 따라 공권력과 특정 종교 사이에 사실상의 협력관계를 인정한다. 가령 공권력과 특정 종교의 사실상 협력관계가 불우이웃 돕기 등의 공익 목적이라면 법원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²³⁾ 이는 정교분리 원칙이 국가와 종교 사이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그 사이

17) 『공직자종교 차별 예방업무 편람』(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4쪽.

18) 대법원 1997.6.27. 선고 97도508 판결; 헌재 2001.9.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가령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공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다수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인정된다.

19) 대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판결. 학교는 ‘설립·경영’ 주체에 따라 국가-국립학교, 지자체-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 구분), 법인 또는 사인-사립학교로 구분된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일부개정 2008. 03. 21.) 제3조; 〈고등교육법〉(법률 제8988호, 일부개정 2009. 01. 30.) 제3조.

20) 〈헌법〉 제21조 제1항.

21) 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6002 판결.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22)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4.19. 선고 95카합47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1996년 판례는 〈헌법〉 제20조 2항을 종교적 중립 의무로 표현한다.

23) 〈공무원 종교 차별금지 법안 위헌 소지〉, 《문화일보》, 2008년 11월 24일자.; 이정훈, 위의 글,

에서 조율되는 전략적 관계임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에는 정교분리를 전제한 선교활동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교단 내부의 억압 구조가 간과되고, 따라서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보인다.²⁴⁾ 그렇지만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 차별 금지, 종교 자유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령 공직자의 종교 차별은 종교 자유의 과도한 실현 또는 침해, 나아가 정교분리 원칙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적한 법 앞의 평등과 종교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국교 불인정과 정교분리 등의 법률상 원칙은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들 원칙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 인격권²⁵⁾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행복 추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²⁶⁾

그렇지만 공직자가 이 원칙들의 미준수로 보이는 사례에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된 경우는 드물다. 그와 관련하여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일요일) 공고 행위가 종교의 자유 침해와 평등 원칙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001년 판례,²⁷⁾ 군종목사의 이단 비판 관련 출판이나 설교 행위가 국가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종교적 중립 준수 의무 위반이나 명예 등 인격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2006년 판례 등을 지적할 수 있다.²⁸⁾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도 개신교인들이 개정안을 주도한 것이고, 법 위반자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²⁹⁾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정교분리 위반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법적 구제가 종교 차별이나 종교의 자유 침해보다 어렵다. 법원도 종교단체 내부 분쟁에 대해서는 일반 법질

133-148쪽.

24) 〈한국종교문화학회, 14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세계일보》, 2001년 4월 11일자; 이진구, 『근대 한국사회의 종교자유 담론 - 양심의 자유와 종교집단의 자유 -』, 『종교문화비평』 1(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50-79쪽.

2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02. 29.)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인격권은 인격의 주체로서 개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다.

26)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충하는 기본권으로 우선 적용되는 기본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적용된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헌재 1995.7.21. 93헌가14 결정; 헌재 2000.12.14. 선고 99헌마112 결정; 헌재 2001.9.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헌재 2005.4.28. 선고 2004헌바65 결정.

27) 헌재 2001.9.27. 선고 2000헌마159 판결.

28) 서울고등법원 2006.11.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참모장교이자 성직자인 군종장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군대공동체의 특수성(조직의 안정과 단결)을 근거로 ‘종교적 중립의무’의 한계와 범위가 정해진다.

29) 〈조계종 ‘공무원법 개정, 아쉽지만 환영’〉, 《불교닷컴》, 2009년 1월 14일자.; 〈실효성 없는 종교중립 법안 ‘기독교의 힘’〉, 《불교닷컴》, 2009년 1월 14일자.

서와 직접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위임하는 풍토이다.³⁰⁾ 가령 1996년 판례에 따르면, 종교적 중립성을 근거로 국가가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단이나 사이비 분쟁에 개입하여 특정 종교나 교리에 대한 시비를 선언할 수 없다.³¹⁾ 그 외에 종교 편향으로 지적되는 공직 인사 기준이나, 예산 지원의 구체적 공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종교 차별로 인해 권리나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행정·헌법 소송 등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원인 제공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종교 차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종교로 인한 비합리적 차별’보다 ‘종교로 인한 고용상의 인권침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공직자의 종교 차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민원 신청을 하는 상황이다.³²⁾ 나아가 고위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탄핵제도, 주민소환제, 또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이 가능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³³⁾

법적 처벌 사례는 드물지만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으로 고백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직자는 법 앞의 평등과 종교 차별 금지 원칙, 종교의 자유 보장 원칙, 국교 불인정과 정교분리 원칙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그 원칙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사이의 관계 조율에 신중해야 한다.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동시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내용 가운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관계 설정이다. 만약 “공직자에게 종교의 자유 보장과 종교 중립을 포함한 정교분리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법적 쟁점이 된다. 가령 고위 공직자가 일반 대중 앞에서 특정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특정 사업성과를 자축할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30) <헌법> 제101조 1항; <법원조직법>(법률 제8794호, 일부개정 2007. 12. 27) 제2조 1항; 『종교관련법 조사 및 입법방향 연구』(서울: 문화관광부·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04), 7쪽.

31)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4.19. 선고 95카합4745 판결. 당시 판례에서는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나 왜곡 여부의 과학적 입증 어렵고, ‘의견’에 해당되는 종교·교리적 분석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특정인을 ‘사이비’로 규정한 출판물이 인격권·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32) 2009년 1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측과 통화에 따르면, 고용이나 처우와 관련된 종교 차별 민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조사관 1인이 배당된다. 둘째, 담당조사관이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의 답변 등을 조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셋째, 위원들이 고용상의 ‘비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 시정권고를 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넷째, 해당 기관은 수용불가·일부수용·전면수용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33) 정상우 외 4인,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 기초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58-60쪽.

다른 근로자가 아니라 공직자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사이의 조율은 중요한 문제이다. 공직자는 한편으로 국민이자 개인이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에 대해 공직자가 대체로 ‘공공성 내의 자유 실현’이라는 틀 속에서 두 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이 틀은 최소한 공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공직자가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여 과도하게 실현한다면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Ⅲ. 종교 편향·차별 논란 사례와 유형

종교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는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다. 그로 인해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 한국 사회에 확대된다. 그 과정에서 흔히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은 2008년의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논란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된다. 가령 1992년 민자당의 불교 억압의 지적, 1996년 4·11 총선 당시 종교 편향 정책 반대 법회의 개최, 1997년 ‘과계승 탈’을 삽입한 선거운동 홍보물과 한나라당 총재의 사과, 1998년 6.4 지방선거 직전에 조찬기도회와 초하루 법회에서 ‘종교 편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서울시장후보의 언급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4.13 총선 당시에 종교 편향 인사의 국회진출 저지 계획을 발표한 종교계의 사례, 2004년 4월 총선 당시 일부 기독교계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고 ‘2004맑은정치불교연대’가 종교 편향 없는 정치인을 선택 기준에 포함시킨 사례 등을 지적할 수 있다.³⁴⁾

1990년대 이후의 종교 편향 논란 사례들의 목록을 작성하면 그 양이 적지 않다. 내용과 분야별 유사성을 토대로 사례들의 목록을 유형화하면 그 유형은 크게 ①공직 인사(人事), ②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③공직자의 언행, ④기존 제도 등으로 분류된다.³⁵⁾ 각 유

34) <통불협, 대선 대응방침 확정>, 《한겨레》, 1992년 10월 11일자.; <‘통일대불 점안식’ 3당 눈독>, 《한겨레》, 1992.11.16.; <신도물표 겨냥…종교계 파고들기>, 《동아일보》, 1992년 12월 1일자.; <시웃돈 내며 ‘김영삼 축원’ 부탁/기독교사조직 물의이어>, 《한겨레》, 1992년 12월 4일자.; <여권 “불심 달래기” 노심초사>, 《한국일보》, 1996년 3월 24일자.; <조순 총재 ‘과계승 탈’ 사과>, 《동아일보》, 1997년 12월 10일자.; <불뽕은 중반유세…진흙탕싸움 우려>, 《한국경제》, 1998년 5월 27일자.; <종교계도 ‘낙천-낙선운동’ 참여키로>, 《세계일보》, 2000년 1월 22일자.; <종교단체들 ‘총선 앞으로’>, 《한겨레》, 2004년 2월 26일자.

35) ①공직 인사(人事) 부분, ②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부분, ③공직자의 언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공직자종교 차별 예방업무 편람』(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6-7쪽.

형별 사례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 인사 관련 유형이다. 1990년대를 보면, 1998년 2월에는 과거 5년간의 장·차관 175명(중복임용 제외) 가운데 개신교인 76명(43%), 천주교인 27명(15%), 불교인 23명(13%)이라는 점과 김영삼정부의 각료 인사가 특정 종교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다종교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된다.³⁶⁾ 1998년 3월에는 김대중정부의 대통령 수석비서관이나 장관 가운데 불교인이 거의 없으며, 특정 종교 편중으로 인해 위화감 조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고, 종교 편향 없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서가 발표된다.³⁷⁾

2000년대를 보면, 2002년 11월에는 조계종이 대선후보들에게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에 종교간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³⁸⁾ 2008년 3월에는 현 내각이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에 불교인이 거의 없는 ‘개신교 내각’이라는 점, 전통문화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여 불교인을 임명하고 인사 행정에서 불교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거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³⁹⁾

둘째,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이다. 이 사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 중앙정부와 관련하여 1990년대를 보면, 1996년 3월에 불교의 강원·울원·선원 등의 교육기관과 개신교계 무인가신학교가 배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성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가 ‘기독교 편향’으로 지적된다.⁴⁰⁾ 1997년 1월에는 7급공무원채용시험 일자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문제가 1993년 이후 한국 복음주의협의회 등의 ‘국가 및 기관행사의 주일실시반대운동’과 연결되면서 ‘종교 편향’으로 지적된다.⁴¹⁾ 1999년 8월에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 제정 문제가 개신교 편향으

36) 〈‘김영삼 정부 각료’ 개신교 신자 43%/불교신문 조사〉, 《세계일보》, 1998.2.28. 이 기사에 따르면 3대 이영덕 내각의 49명 각료 가운데 개신교 28명, 가톨릭 6명, 불교 5명, 무종교 10명이었다. 특히 개신교는 4대 이흥구 내각의 50명 각료 가운데 29명, 5대 이수성 내각의 65명 가운데 32명을 차지하였다. 역대총리 6명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각각 3명, 국방부장관은 4명중 3명이 기독교, 1명이 천주교신자였으며,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문체부의 장·차관 가운데도 차관 1명을 제외한 7인 모두가 개신교신자였다.

37)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불제자 한명도 없어〉, 《동아일보》, 1998년 3월 4일자.

38) 〈조계종, 대선후보들에 촉구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을”〉, 《동아일보》, 2002년 11월 12일자.

39) 〈‘개신교 내각’...불교 소통로 ‘봉쇄’-장로 대통령 MB, 종교 편향 시작했나〉, 《법보신문》, 2008년 3월 10일자.

40) 〈성직자 양성안 특정 종교 편향〉, 《한겨레》, 1996년 3월 3일자.; 〈총선 앞두고 종교계 갈등/‘정부규탄법회’ 싸고 불교-기독교계 공방〉, 《한국일보》, 1996년 3월 26일자.; 〈정부 종교편향정책 비판/불교단체, 규탄법회 개최〉, 《한국일보》, 1996년 3월 31일자.

41) 〈곤혹스런 김한규 총무처〉, 《문화일보》, 1997년 1월 24일자.; 〈공무원 평일시험 합리적/일요일은 원래 쉬는날〉, 《국민일보》, 1997년 1월 25일자.; 〈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 종교계 논란〉, 《경향신문》, 1997년 1월 25일자.; 〈공무원 평일시험/교계, 이의제기 안 될 말〉, 《국민일보》, 1997년 1월 25일자.; 〈공무원시험 평일 실시 ‘특혜’ 매도/정치권등 일부주장은 중대과오〉, 《국민일보》, 1997년 1월 27일자.; 〈평일 공무원 시험 반대, 불교계 3백명 규탄법회〉, 《한겨레》, 1997년 2월 5일자.

로 지적된다.⁴²⁾

2000년대를 보면, 2000년 1월에는 특정 종교 또는 사상의 강요 금지와 벌칙이 포함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고,⁴³⁾ 2000년 11월 시행령에도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및 종파간의 형평성’과 종교 차별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⁴⁴⁾ 그렇지만 인권 침해 및 종교 편향 논란은 지속된다. 가령 2003년 2월에 법무부와 (재단)아가페가 민영교도소 관련 위탁계약(12년)을 체결하면서 종교 차별의 위험이 지적된다.⁴⁵⁾ 2008년 6월에는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 안내시스템(‘알고가’)에 주요 사찰 표시가 빠진 사건이 종교 차별로 지적된다.⁴⁶⁾ 특히 2008년 7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의 탑승 차량 검문 사건으로 종교 편향과 관련된 대규모 규탄 집회, 그리고 경찰청장의 조계사 방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진행된다.⁴⁷⁾

각 지자체와 관련하여 1990년대를 보면, 1999년 8월에는 한문화운동연합의 전국 초·중등학교 단군상 건립 운동에 대해 개신교계가 정교분리 위반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한다.⁴⁸⁾ 1999년 7월경에 전남 함평군과 영광군, 그리고 경남 하동군의 전통조형물 공원 조성 사업과 청학동 삼성궁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개신교계가 종교 편향 문제를 제기한다.⁴⁹⁾

2000년대를 보면, 2000년 6월에는 서울시의 노인복지관 위탁업체 선정 문제가 종교 차별 문제로 제기된다.⁵⁰⁾ 2004년 9월에는 지하철역 이름(사찰명)을 변경하라는 광주시의회의원의 요구가 종교 편향 논란이 된다.⁵¹⁾ 2008년 9월에는 울산시의 지역전통 문화제인 ‘처용문화제’에 대해 기독교계가 처용을 무당으로 하는 특정 종교활동 지원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종교 차별 문제가 제기된다.⁵²⁾

셋째, 공직자의 언행 관련 유형이다. 1990년대를 보면, 1997년 8월에는 신한국당 대표의 ‘국가시행 일요일 실시문제’에 대한 발언을 둘러싸고 불교계 신문사들이 종교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불교계 신문사들에 대한 ○○특보의 방문 사과가 이어진다.⁵³⁾ 1997년 12

42) 〈종교계 ‘민영교도소’ 논란 후끈〉, 《한겨레》, 1999년 8월 28일자.

43) 〈종교계, 민영교도소 설립 싸고 논란〉, 《세계일보》, 2000년 1월 15일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 신규제정 2000.1.28.).

44)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996호, 신규제정 2000.11.9.) 제14조.

45) 〈민영교도소〉, 《한겨레》, 2003년 2월 27일자.

46) 〈국토부 지도사이트에는 ‘사찰’이 없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23일자; 〈수만평 봉은사는 흔적만, 교회는 소형도 빠짐없이-‘사찰’ 지운 국토부 지도〉, 《경향신문》, 2008년 6월 24일자.

47) 〈지관스님 과잉 검문 경찰 2명 전보, 어 청장 ‘불교계에 송구’〉, 《세계일보》, 2008년 8월 5일자.; 〈어청수 경찰청장 사과에 /지관 스님 ‘다 없던 일로’〉, 《한겨레》, 2008년 11월 18일자.

48) 〈단군상 논란〉, 《국민일보》, 1999년 8월 2일자.

49) 〈장승 단군상등 관광자원화 개신교계와 곳곳서 마찰〉, 《문화일보》, 1999년 7월 23일자.

50) 〈서울시 종교 편향 논란〉, 《세계일보》, 2000년 6월 10일자.

51) 〈지하철역 이름에 웬 사찰명…光州의회 손재홍의원 ‘중심사 입구역’ 개정 청원〉, 《국민일보》, 2004년 9월 23일자.

52) 〈울산 ‘처용문화제’가 무당 편향? 기독교단체 ‘특정종교 지원’ 폐지 요구〉, 《경향신문》, 2008년 9월 23일자.

월에는 차기 대통령이 종교 편향 문제를 감안하여 자신의 종교와 관련된 성탄절 미사에 불참한다.⁵⁴⁾ 1999년 11월에는 1998년 6월 이후의 영부인 행사 참여에 대해 개신교 편향이 지적된다.⁵⁵⁾

2000년대를 보면, 2004년 5월 기독교 연합기도회에 참석한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이 시민단체와 범불교계 차원의 반발, 온라인상 국민소환 서명운동,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동년 7월에 서울시장이 유감과 재발 방지를 표명하고, 인터넷 개인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한다.⁵⁶⁾ 2004년 12월에는 포항시장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포항시기관장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한다.⁵⁷⁾ 2008년 6월에는 경찰청장 사진이 실린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포스터’에 대해 불교계가 종교 편향 문제를 제기하고, 개신교계가 역차별을 주장한다.⁵⁸⁾

특히 2008년에는 지자체장들의 언행이 종교 편향 논란이 된다.⁵⁹⁾ 8월에는 전남 여수시장의 《크리스찬 투데이》 기고문,⁶⁰⁾ 9월에는 인천시장의 세계선교센터 건립과 인천의 세계복음화 관문화 관련 언행,⁶¹⁾ 그리고 남양주시장의 시목(市牧)위원회 구성과 성시화운동 관련 석찬기도회 참석이 문제가 된다.⁶²⁾ 그와 관련하여 지자체장들의 언행이 공직자의 평신도 중심의 홀리클럽과 목회자 중심의 성시화운동 참여와 연관된다는 점이 지적된다.⁶³⁾

53) <이대표 ‘말이 무서워’/일요일 시험불가 거론하다 불교계 항의>, 《동아일보》, 1997년 8월 30일자.

54) <DJ 특정종교 부담 성탄미사 불참>, 《국민일보》, 1997년 12월 25일자.

55) <이회호여사 특정종교 편향>, 《경향신문》, 1999년 11월 23일자.

56) <李 시장의 경솔한 ‘서울봉헌’ 발언>, 《문화일보》, 2004년 7월 3일자.; <이명박 시장 ‘서울봉헌’ 책 임지라>, 《한겨레》, 2004년 7월 5일자.; <李시장 ‘서울시 봉헌’ 손배소>, 《경향신문》, 2004년 7월 27일자.; <이명박시장 ‘서울봉헌’ 사과>, 《한겨레》, 2004년 7월 15일자.; <이명박 서울시장 ‘특정종교 편향발언 죄송’>, 《세계일보》, 2004년 7월 15일자.

57) <‘포항시 홀리클럽 탈퇴요구 종교자유 침해’ 교계 성명>, 《국민일보》, 2004년 12월 15일자.

58) <경찰서 게시판에 ‘경찰’복음화‘ 기독교 행사 포스터/ 불교계 ‘경찰청 종교 편향’ 반발>, 《한국일보》, 2008년 6월 26일자.; <기독교 공직자 종교편향 논란, 이대로 좋은가>, 《크리스천투데이》, 2008년 9월 5일자.

59) <지자체장 종교 편향 잇단 갈등>, 《전남일보》, 2008년 8월 28일자.

60) <‘엑스포는 하나님의 선물’ 여수시장 종교 편향 논란>, 《경향신문》, 2008년 8월 23일자.

61) <안상수 인천시장도 종교 편향 논란>, 《한겨레》, 2008년 9월 11일자.; <안상수 시장 또 종교 편향 논란>, 《경향신문》, 2008년 9월 12일자.; <안상수 시장 또 종교 편향 논란-불교계 ‘기독교 시설 건립에 예산 쏟아’>, 《경향신문》, 2008년 9월 13일자.; <노은하 ‘안상수 시장 종교 편향 시정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2008년 9월 11일자.

62) <남양주시장 ‘시목위원회’ 구성, 종교 편향 부채질-‘성시화운동’ 관계자 초대해 석찬기도회 열어>, 《오마이뉴스》, 2008년 9월 9일자.

63) <대구·경북 3만여 불교도 /종교 차별 금지 입법촉구>, 《한겨레》, 2008년 10월 31일자.; <‘종교 편향 반대’ 범불교대회 다시 열린다>,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31일자.; <종교 편향은 바로 국론분열이라 생각한다>, 《오마이뉴스》, 2008년 11월 1일자.; <지역 범불교도 ‘종교 편향 금지법 제정’을>, 《영남일보》, 2008년 11월 3일자. 전교회(Whole Church)가 전복음(Whole Gospel)을 전시민(Whole City)에게 전한다는 ‘3전운동’(=성시화운동), 그리고 성민(聖民)·성가(聖家)·성직(聖職)·성회(聖會)·성사(聖社)·성국(聖國)·성세(聖世)의 ‘7성(聖)운동’을 진행하는 홀리클럽에 대해서는 성시화운동신문

넷째, 기존 제도 관련 유형이다. 1990년대를 보면, 1996년 2월에는 화폐도안에 대해 개신교계에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평등권의 침해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그리고 동년 7월에 ‘화폐도안변경 범국민협의회’를 발족하여 지폐와 동전에 새겨진 용, 연꽃, ‘만’자, 봉황, 학, 다보탑 등에 대해 화폐도안의 불교 편향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1997년 3월과 2006년 2월, 헌법재판소는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아니라 문화재의 도안이라고 판결한다.⁶⁴⁾ 종교적 상징물과 관련하여 ‘종교적 목적이 없는’ 문화재 활용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2000년대를 보면, 2000년 4월에는 불교계에서 ‘애국가 가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다. 기독교 찬송가에서 따온 애국가를 주요 국가 행사에서 부르게 하고 TV와 라디오에서 매일 방송하는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제20조 1항)와 행복추구권(제10조)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애국가 가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이유 없음’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⁶⁵⁾

앞의 유형별 사례들은 2008년의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최소한 1990년대부터 영역별로 누적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각 유형별 논란이 공직자 개인, 소속 기관, 공직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 여론 형성, 나아가 그에 대한 제반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도 관련 유형을 제외하면 각 유형은 국민에 의해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근로자적 성격과 함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과 책임의 의무를 지닌 공직자가 논란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⁶⁶⁾ 이런 맥락에서 이 논란은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법적 규정인 정교 분리, 종교의 자유, 종교 차별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 1990년대부터 누적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논란의 이면에는 법적 관련 규정의 미준수를 넘어 모종의 종교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령 인사 유형의 사례에서는 특정 종교인만이 옳거나 신뢰할 수 있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유형, 언행 유형에서는 특정 종교만 옳다는 편

(<http://www.holycitynews.com>)과 홀리클럽 홈페이지(<http://www.holycitym.com/>)를 참조.

64) 〈화폐도안 ‘종교 논쟁’ 재연〉, 《동아일보》, 1996년 7월 9일자.; 현재 1997.3.27 선고 96헌마68 판결; 현재 2006.2.7. 선고 2006헌마20 판결.

65) 〈애국가, 종교의 자유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세계일보》, 2000년 4월 1일자.; 2000헌마178 애국가 가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66) 현재 1992.4.28. 선고 90헌바27 결정;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제7조 제1항·제2항. 다만 〈공직자윤리법〉(법률 제9617호, 일부개정 2009. 04. 01.) 제4조의 공직자 범위에는 4급 미만의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는 ‘공직자’의 법적 정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임명주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시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구분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견, 나아가 특정 종교만이 한국인에게 가치가 있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제도 유형에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례별 유형화는 종교 편견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례별 유형화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⁶⁷⁾ 관련 사례의 이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예방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시사한다. 교육의 방향은 종교 편향·차별에 담긴 종교 편견에 대한 성찰이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인사 영역, 정책결정과 행정집행 영역, 언행 영역, 제도 영역 등이다.

IV. 종교 편향: 종교 이해와 편견

2009년 초반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교 편향·차별 예방 교육이 시책교육이 된다. 교육 일정은 일선 경찰서, 여주검찰청, 안산시청, 통계청, 관세청, 전주지방환경청,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 단체, 중앙공무원교육원, 문화재청, 병무연수원 등의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다. 이 교육은 한국의 인구, 교육, 사회복지 등과 종교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향후에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교육 대상이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다.⁶⁸⁾ 그리고 1-2시간 단위의 일회성이며, 시책교육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수강생의 관심이 높지 않다. 또한 강사별로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교육 대상자의 범위 설정이 정부의 몫이라면 그 나머지는 대체로 강사들의 몫이다. 비록 일회성의 시책교육이지만 수강생의 흥미와 내용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강사이기 때문이다.

앞의 유형별 사례에서 지적했듯이, 예방 교육의 방향은 종교 차별과 종교 편향에 종교 편견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종교 편견에 대한 성찰이다. 종교 편견이 대외적으로 작동될

67) 『공직자종교 차별 예방업무 편람』(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5-6쪽. 정부도 공직 인사 관련 유형에 종교에 따른 차별적 인사와 공공서식의 종교란 기재 행위 등,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예산과 시설 관련 특혜, 종교적 행위의 강요, 공공자료의 특정 종교 편중, 근무시간 내 특정종교 관련 활동 등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언행 관련 유형에 근무시간에 특정종교 행사에서 표명하는 종교 편향적 제반 언행과 사적 특정종교 활동 참여 또는 활동의 강요, 피의자나 수감자 등에 대한 종교 강요 등을 포함시킨다. 다만 언행 관련 유형에는 ‘각 종교단체의 종교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고 인류애에 입각하여 종교적 교화, 갱생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는 종전대로 시행’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68) 2009년 9월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위직 공무원에게도 예방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고위직 공무원 대상 교육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때 종교 편향과 종교 차별 논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분열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그 맥락에서 종교 편견에 대한 성찰은 의미가 있다. 물론 종교 편견은 종교에 대한 관점과 연관된다. 종교에 대한 적절한 관점이 형성될 때 종교 편견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방 교육의 방향은 종교에 대한 적절한 관점과 종교 편견의 성찰이다. 이미 종교 차별 관련 법적 근거와 쟁점은 II 장, 종교 편향·차별 사례들과 유형은 III 장에서 서술하였다. 이하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이해, 종교에 대한 헌법학적 관점과 필자의 의견, 그리고 종교 편견의 성찰 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 단체에 대한 법적 이해의 문제이다. 여러 법적 규정을 볼 때, 종교단체는 ‘법인 또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종단) 및 개별단체’, 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소속종교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⁶⁹⁾ 한 마디로 종교단체는 법적으로 ‘비영리(공익)’가 목적인 법인(사/재단) 또는 비법인(사/재단)이다.⁷⁰⁾

실제로 종교단체는 주로 비영리 법인보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⁷¹⁾인 비영리 비법인의 형태를 취한다. 관할 시(구)청·군청은 비영리 법인 형태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3자리, 비영리 비법인 형태에 ‘종교고분번호 89’가 포함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10자리를 부여한다.⁷²⁾ 관할 세무서는 비법인 가운데 부동산이 없는 개별 교회 등의 소속종교단체에게 ‘종교’ 구분 번호가 없는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⁷³⁾ 등록번호를 받은 종교단체에게는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⁷⁴⁾ 이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6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70) 〈민법〉(법률 제9650호, 일부개정 2009.05.08.) 제3장(법인) 제32조와 제33조. ‘종교’와 ‘자선’ 등을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2.29) 제2조(정의)에 따르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주된 목적인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71) 〈국세기본법〉(법률 제9263호 일부개정 2008.12.26.) 제4절 인격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72) 〈부동산등기법〉(법률 제9774호, 일부개정 2009.06.09)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90호 일부개정 2008.07.07.) 별표 1;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225호 법제명령 및 일부개정 2005.12.30.) 제2장 제4-10조. 종중은 13자리, 기타단체는 9자리, 종교단체는 10자리를 받는다.

73)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일부개정 2008.12.26.)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종교구분번호(‘89’)가 있지만,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비영리 구분번호만 있다. 한편, 고유번호증에는 고유사업의 명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여부를 파악된다. 소속종교단체들이 고유번호증을 받는 이유는 실명제 시행 이후 통장의 개설, 연말정산시 기부금 처리 문제 해결에 따른 것이다.

〈표 2〉 종교단체의 법적 존재 형태

존재 형태(민법)	분류	목적	번호	재산
(비영리) 法人	사단	영리 아닌 ‘종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소유
	재단	상동	상동	상동
(비영리) 非法人 =法人아닌 =法人格없는 =權利能力없는	사단	집단(교회, 신도회 등)은 존재하 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총유(=시설에 명의신탁)
	재단	목적 재산은 존재하나 법인등기 를 하지 않은 단체	상동	재단 소유

둘째, 종교에 대한 관점의 문제이다. 헌법학 논의에서 종교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적 의존의 감정’이다. 다만 신이나 초월성 개념이 기독교 이외의 신 관념이나 외계의 공간적 초월성까지 포함한다는 점, 믿음에 지적·의지적 요소 외에도 감정적 경험이 포함된다는 점, 종교 여부를 신도·사제가 포함한 제도화 여부로 판단할 수 없고 개인적 차원의 종교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 과학성 또는 이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종교 개념에 토속신앙이나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믿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유의사항이다.⁷⁵⁾

그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판결 내용, 즉 ‘한국과문따과학회’를 체육단체가 아니라 종교단체로 명시한 판결 내용은 종교에 대한 법적 관점을 보여 준다. 판결 논리는 한국과문따과학회의 기공 수련이 심신수련으로 체육적 요소를 내포하지만 ‘궁극의 신앙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수련 내지 수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앙과 다른 체육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공수련 등의 체육활동도 정신적인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여 종교적 영역에 접근하는 면이 있지만 정신의 평안을 일차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단련을 통해 정신건강까지 아울러 부수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 활동과 다르다’는 것이다.⁷⁶⁾

이런 판결 내용은 종교에 대한 법적 관점이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가지고 종교와 체육을 구분하는 심신이원론적 종교 관점이다. 심신이원론적 종교 이해는 2009년 1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논리에도 보인다. 당시 법 개정의 논리 가운데는 ‘종교가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야’라는 것이었다.⁷⁷⁾

74) 〈부가가치세법〉(법률 제9268호 일부개정 2008.12.26.) 제5조 (등록) 제12조(면세)

75) 송기춘, 『우리 憲法上 宗教의 概念』 『헌법학연구』 5-2(서울: 한국헌법학회, 1999), 271-274쪽.

76) 〈심신·기공수련 단체는 종교단체〉, 《법률신문》, 2007년 12월 8일자. 한국과문따과학회는 2007년 2월 서울시에 ‘체육관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법인설립허가 반려 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8291)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동년 11월 28일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법적 종교 정의에는 어느 정도 종교학 연구자의 논의가 참조된다. 그렇지만 종교를 ‘신이나 초월적 존재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적 의존의 감정’으로 정의하고 유의사항을 두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유의사항은 법적 종교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모호성을 없애려면 종교 정의에 오히려 유의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정신과 물질, 또는 초월적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입장도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며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학 내에서는 보편적 종교 정의 또는 이해가 지양된다. 물론 연구자에게 나름대로의 종교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 정의의 보편성은 주장되지 않는다. 종교 정의는 특정 환경에서 비롯된 특정 관점과 대상을 담고 있어 보편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에게도 특정 종교를 기준으로 삼은 종교 정의보다 다양한 종교를 폭넓게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자는 종교를 ‘모종의 초월에 기대어 다양한 지향성을 보이는 삶의 방식’에 대한 범주로 이해한다. 여기서 ‘초월’은 현재 상황의 변화, 다양한 초인간적 존재나 영역 등을 총칭한 표현이다. 이는 다른 종교도 ‘지향성은 다르지만 선택되거나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는 점, 삶의 방식은 옳고 그름, 정통과 이단, 진짜와 가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다른 삶의 방식(종교)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명하는 일종의 거울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종교 편견에 대한 성찰이다. 종교 편견이 종교 차별과 종교 편향의 전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종교 편견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은 부적절하다. 그 맥락에서 종교 편견을 성찰하는 일은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에서 중요하다. 종교 편견의 성찰과 관련하여 먼저 종교 일반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가치판단이 보편적이지 아니어서 편견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 아울러 공직자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가치판단을 편견 가능성의 측면에서 유보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종교 관련 가치판단에 편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종교 인식을 묻는 물음이 필요하다. 종교 관련 가치판단은 종교에 대한 모종의 인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종교 편견을 성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와 관련된 물음은 아래와 같다.

77)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renew07/info/inf/tra_read.jsp). 그 외에도 공직자의 반복되는 차별적 행위 사례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을 축소하고 비생산적 법리논쟁과 종교간 대립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와 그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
- 종교와 과학은 비합리성과 합리성의 관계인가? 과학자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인가?
- ○○○를 ‘종교’와 ‘사이비’, 또는 ‘정통’과 ‘이단’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맥락에서 누가 어떤 의도로 내린 판단인가?
- ○○○이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면 ○○○에 속한 종교인들도 ‘잘못된’ 인간인가?
- ○○○만 ‘옳은’ 종교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외의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만큼 그 종교들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사이비’ 종교인가? 과거의 사회적 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비’ 종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들은 없는가?
- ‘유한[인간]’이 ‘무한[초월]’을 모두 아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유한[인간]’이 ‘무한[초월]’을 안다고 할 때 그 앎의 보편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초월’의 이름으로 다른 ‘유한한 인간’을 비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 역대 정부의 종교 인식은 어떤 내용이고 왜 그런 인식을 보였는가?, 그 인식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 다른 종교에서 활용되는 ○○를 종교 상징(symbol) 또는 ‘우상(偶像, idol)’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런 판단이 자신이 속한 종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가?

이 물음들은 공직자가 종교 일반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기존의 가치판단이 편견일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흔히 가치판단 또는 인식은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의 물음 뒤에는 공직자가 언제부터 그런 가치판단과 인식을 당연시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물음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인류 역사에서 그 가치판단의 기준과 인식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여 당연시되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물론 공직자는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입각하여 개인적으로 종교 관련 가치판단과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 수행을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종교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하거나 선택된 삶의 방식이다. 따라서 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침해하거나 그들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예방에서 핵심은 종교 편견을 성찰하는 것, 종교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종교에 대한 관점도 지속적인 성찰의 대상이다. 공직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들이 볼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 작용되는지를 고려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감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V. 나오면서

공직자의 종교 편향·차별 예방 교육에는 그 방향과 내용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종교 차별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쟁점을 제시한 후(Ⅱ장), 1990년대부터 발생한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 사례들을 유형화하면서 그 이면에 종교 편견이 있음을 지적하였다(Ⅲ장). 그리고 종교 편견의 성찰 차원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이해, 종교에 대한 관점, 종교 편견의 성찰을 위한 물음들을 제시하였다(Ⅳ장). 각 장에 서술된 내용들은 예방 교육의 내용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교재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종교 관련 법적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 지속된 것은 그 이면에 종교 편견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08년의 논란 원인으로 현직 장로 대통령 취임 이후 일부 기독교인들의 실수, 타종교인들의 오해, 언론의 선정적 보도, 반기독교 정서 등이 맞물림이 지적된다.⁷⁸⁾ 그렇지만 유사한 논란이 이미 1990년대 이후부터 누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⁷⁹⁾ 그 근본 원인은 종교 편향과 종교 차별의 전제인 종교 편견이다. 만약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에서 종교 편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그 논란은 부적절하다. 이런 맥락에서 예방 교육의 방향은 종교 편견의 성찰이며, 그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적절한 관점의 형성이다. 교육 내용도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 교육에는 무엇보다 적절한 방향과 내용 선정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강의의 효율성도 감안되어야 한다.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최소한 네 가지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강의 선택권이 없는 수강생의 피동성과 그로 인한 주의 산만의 해소이다. 이를 위해 수강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이 필요하다. 둘째, 시책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수강생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낯설음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강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예방 교육 이전과 이후의 모습 또는 결과를 수강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⁸⁰⁾

한편 예방 교육에서는 공직 수행이 업무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공직 수행의 판단 기준은 공직자의 상황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 작용되는가’의 여부이다. 물론 그 판단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도 고려되어야 한

78) <‘기독교연예인들 자살’, 예방에 관심 고조>, 《크리스천투데이》, 2008년 12월 29일자.

79) <굶주린 북한동포 돕기 한마음/’96종교계 결산>, 《세계일보》, 1996년 12월 21일자.; <개신교/KNCC의 ‘개혁·개방’ 이룬 해/’96종교계 결산>, 《서울신문》, 1996년 12월 22일자.

80) 김철주·고병철, 『종교수업에서 동기유발의 필요성과 전략-J. M. Keller의 ARCS이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7(성남: 한국종교학회, 2007), 183-220쪽.

다. 만약 공직자의 판단과 달리, 주변인이 그 상황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 작용된다고 판단하면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관계도 ‘공공성 내의 자유 실현’ 차원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직자라면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 정교분리 원칙의 실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종교 편향·차별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군부대, (민영)교도소 영역이 주목된다. 이들은 특정 신앙교육을 강조하는 종교전문가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동시에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활동 과정에서 선(포)교의 강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실제로 유형별 사례를 통해 세 영역에서 종교 편향·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영역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2008년의 공직자 종교 편향·차별 논란의 결과는 정교분리나 종교 자유 담론의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⁸¹⁾ 물론 이 논란은 사회적 갈등 유발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2008년의 논란이 1990년대부터 누적된 잠재적 갈등의 표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다른 안목이 필요하다. 이 논란을 인권, 국가, 종교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성찰 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 논란을 계기로, 향후 공직 사회에 종교 차별,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제고되기를, 나아가 종교에 대한 적절한 관점 형성과 편견 해소, 그리고 종교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미래를 감안할 때, 그리고 한국인, 한국사회, 인권 등과 종교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현재의 시책교육 이외에도, 공직 초년생들에게 그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담긴 강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1) 〈‘종교 차별’ 사회 담론화 큰 성과〉, 《불교신문》 2487호, 2008년 12월 24일자.

참고문헌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법률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불교닷컴》;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영남일보》; 《오마이뉴스》; 《울닷컴》; 《전남일보》; 《크리스천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프로메테우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CDNTV》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renew07/info/inf/tra_read.jsp)

성시화운동신문 (<http://www.holycitynews.com>)

홀리클럽 (<http://www.holycitym.com/>)

〈고등교육법〉(법률 제8988호); 〈공직자윤리법〉(법률 제9617호);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419호);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9402호); 〈국세기본법〉(법률 제9263호);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민법〉(법률 제9650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996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 〈법원조직법〉(법률 제8794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90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225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9268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977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8852호);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지방공무원법〉(법률 제9420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형법〉(법률 제7623호).

대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60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4.19. 선고 95카합4745 판결; 현재 1992.4.28. 선고 90헌바27 결정; 현재 1995.7.21. 93헌가14 결정; 현재 1997.3.27 선고 96헌마68 판결; 현재 2000.12.14. 선고 99헌마112 결정; 현재 2001.9.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현재 2005.4.28. 선고 2004헌바65 결정; 현재 2006.2.7. 선고 2006헌마20 판결.

강돈구의 5인,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9.
김철주·고병철, 「종교수업에서 동기유발의 필요성과 전략—J. M. Keller의 ARCS이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7(성남: 한국종교학회,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파주: 법문사, 2008.

남 현, 「文民정부인가, 神民정부인가?」 『僧伽』 15(김포: 중앙승가대학교, 1998).

박희승, 「한국 사회의 변화와 불교」 『현상과 인식』 18-4(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4).

서동석, 「탄압과 핍박으로 점철된 현대 한국불교를 분석한다」 『僧伽』 11(김포: 중앙승가대학교, 1994).

송기춘, 「우리 憲法上 宗教의 概念」 『헌법학연구』 5-2, 서울: 한국헌법학회, 1999.

이정훈,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 차별금지 입법 요구의 위헌성」 『제48회 전국불교학술대회자료집』, 2008년 가을(한국불교학회: <http://ikabs.org/>).

이진구, 「근대 한국사회의 종교자유 담론—양심의 자유와 종교집단의 자유—」 『종교문화비평』 1(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 정상우 외 4인.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 기초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차별과 종교인권』. 서울: 도서출판 초록마을. 2009.
- 최창술. 「정부정책의 종교 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학술 세미나》.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6.
- 『공직자 종교중립 교육』.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 『공직자종교 차별 예방업무 편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 『종교관련법 조사 및 입법방향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04.

원고접수: 2009년 10월 19일 1차심사: 11월 14일 게재승인일: 12월 1일

연구자 소개: 고병철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한국학중앙연구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종무행정, 한국종교사, 동아시아종교사.

③ 주요논저: 『일제하 재만 한인의 종교운동』(2009), 『한국 종교교단 연구 V』(5인 공저, 2009),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6인 공저, 2009), 「중등학교 종교 교과의 교수·학습 방식」, 「종립사학과 종교교과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한국 종무행정의 역사적 경향과 전망」 등.

④ E-mail: 03250@aks.ac.kr

Abstract

Public Servant'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ligio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Korea

Ko, Byoungch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enior research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public servant'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ligio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Korea. Through this research, I tried to reflect on legal basis of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on religious prejudices.

To achieve these purposes, in chapter 2, 'legal basis and issues of religious discrimination', I analyzed legal basis relating religion-religious discrimination, religious freedom, and the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religion. And I emphasized that, doing public job, the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religion can be a lot more important than religious freedom.

In chapter 3, in the title of 'examples and types of religio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 classified cases of religio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ypes, and divided into four classes.

And, in chapter 4, 'religious prejudice: understanding and prejudice of religion',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on religious prejudice. And I suggested my views of understanding religion.

Finally, I urged to reconsider the instructional efficiencies and methods in public servant' education to prevent religio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Key words: Public Servants, religious prejudices, religious discrimination, right of religious equality, religious freedom, the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religion, types of religio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epoche, reflections on religious prejudices, human rights.